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1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선교·서일준

조경태 · 조정훈 · 유용원

박상웅 · 성일종 · 신동욱
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,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6항 중 "한다"를 "하며, 장애청년(청년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포함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5조제6항 중 "다양한"을 "취약계층 청년, 장애청년 등 다양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	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	6
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	
여야 <u>한다</u> .	<u>하며, 장애청년(청년 중</u>
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
	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 이
	하 같다)이 포함되도록 노력하
	<u>여야 한다</u> .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	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
참여 확대) ① ~ ⑤ (생 략)	참여 확대) ① ~ ⑤ (현행과
	같음)
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	6
설정 • 추진 • 점검을 위하여 청	
년정책 전문가와 <u>다양한</u> 청년	<u>취</u> 약계층 청년,
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	장애청년 등 다양한
력하여야 한다.	